

# 2024학년도 목원대학교 성인지 교육 시행 계획

## □ 성인지 교육 시행 근거

-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의「별표1」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 기관(대학교)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-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12조(무시험검정 대상) 6호 성인지 교육 이수자
  - 가.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: 2회 이상
  - 나.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: 4회 이상
  - 다.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② 제12조(무시험검정 대상) 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규정 개정(2021. 07. 13 공포)

## □ 이수기준

-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강, 연수,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한다. 단,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.(예시 조기졸업(6학기))
- 편입학, 재입학, 복학자에 대한 적용: 편입학,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(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) 적용

## □ 교육 계획

### 1. 교육내용

- ‘성인지 교육 1회’의 인정기준은 다음 성인지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한다.
  -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

※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여성가족부 성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은 인정 가능 (교육횟수: 연1회, 1시간 이상)

- ② 가정 학교(대학 포함)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-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-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※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 교육 콘텐츠 및 연구내용(교육안)을 참고, 활용 가능

## 2. 교육방식

- 교육 횟수: 년 2회 실시(1,2학기)
- 교육 인원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전체 재학생
- 교육 시간: 학기당 총 4차시(4시간) 1회 인정
- 교육 방법: 성인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한 경우만 1회로 인정한다.
  - 예비교원 대상 특강 및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(4차시 또는 2+2차시\_4시간) 1회 인정

## 3. 교육기간

- 교육시기 : 매년 2회 실시 (1학기 : 5월~6월 중 / 2학기 : 11월~12월 중)

## 이수자 관리 및 유의사항

-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(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)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  - ※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.
-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,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.
- 여성가족부 성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(‘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’에 의한 교육)을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,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,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.

## 기타

- 문의: 사범대학 교직원지원과 (042-829-7990, 7991)